

#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칙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해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설치)
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둔다.

### 제4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. 단,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### 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- ③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집행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관할 권리 를 갖는다.
- ④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.
-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⑥ 본회의 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## **제6조 (본회의 구성)**

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학대학학생총회,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, 약학대학운영위원회, 약학대학집행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
## **제7조 (학교 운영 참여)**

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.

1. 약학대학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사항
2. 약학대학 학생 권리과 밀접한 사항
3.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
4.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

## **제8조 (자문위원회)**

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위촉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 2 장 약학대학학생총회

### 제9조 (지위)

약학대학학생총회(이하 약학총회)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### 제10조 (구성)

약학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.

### 제11조 (의장)

- ① 약학총회의 의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- ③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건 시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- ④ 의장은 직접 혹은 본회 회원 중 1인을 지정, 약학총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.

### 제12조 (업무 및 권한)

약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상정된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및 의결
2. 기타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
### 제13조 (회의)

- ① 약학총회는 본회 회원 1/10 이상, 또는 대의원 2/3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약학총회의 소집은 10일 전까지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약학총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3일 이내에 재소집하고, 재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약학총회 안건은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된다. 단, 제12조제1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.
- ④ 약학총회는 본회 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.

### 제14조 (의결)

- ① 약학총회의 의결권은 제4조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.
- ② 약학총회는 본회 회원 1/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2조제1호의 안건은 본회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약학총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약학총회의 안건은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된다. 단, 제12조제1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.
- ④ 약학총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비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진

행될 수 있다.

#### **제15조 (약학대학학생총투표)**

- ① 약학대학학생총투표는 약학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며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진행한다.
- ② 제13조제1항에 의한 발의안건을 발의일로부터 필요에 따라 10일 이내에 약학대학학생총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약학대학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2조제1호의 안건은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

#### 제16조 (지위)

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(이하 약학대회)는 약학총회의 위임기구이며, 동시에 본회의 심의, 의결 및 감사 기구이다.

#### 제17조 (구성)

- ① 약학대회는 약학대학 학생회장단, 약학대학집행위원회 각 집행국(부)장, 각 학과 학생회장단, 특별기구의 장, 각 학과의 각 학년 대표 2인 등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며, 구성원은 약학대회에 참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- ② 필요에 따라 본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
#### 제18조 (의장)

- ① 약학대회의 의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- ③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건 시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
#### 제19조 (업무 및 권한)

약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본회의 회칙개정 심의와 발의 및 의결
2. 약학총회의 소집 요구
3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탄핵소추안 심의
4. 신설 특별기구의 인준
5. 본회 사업의 검토, 조정, 감사 및 의결
6. 기타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약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
7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요구
8. 약학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

#### 제20조 (회의)

- ① 약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대의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약학대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
- ④ 약학대회의 소집은 5일 전까지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약학대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3일 이내에 재소집하고, 재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약학대회 안건은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. 단, 제19조제3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.
- ⑥ 약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.
- ⑦ 약학대회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일부 대체 될 수 있다.

## 제21조 (의결)

- ① 약학대회의 의결권은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.
- ② 약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9조제3호의 안건은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약학대회의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약학대회의 안건은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. 단, 제19조제3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.

## 제 4 장 약학대학운영위원회

### 제22조 (지위)

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의결기구이며, 최고 운영기구이다.

### 제23조 (구성)

- ① 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회장단, 특별기구의 장, 각 학과의 학생회장단 등으로 구성되며, 구성원은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- ② 필요에 따라 본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
### 제24조 (의장)

- ①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직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
### 제25조 (업무 및 권한)

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본회 제반 사업을 심의, 조정하여 약학대회에 제출
2. 본회의 예산안 · 결산안을 심의, 조정 및 의결
3. 집행국(부)장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심의
4. 약학대회 안건 심의 및 조정
5. 약학대회 소집 요구권
6. 회칙 개정안 발의
7. 신설 특별기구의 심의
8. 집행국(부)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

### 제26조 (회의)

- ①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약학대학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소집은 3일 전까지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.
- ⑥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는 재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.

## 제27조 (의결)

- ①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권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.
- ②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5 장 약학대학 학생회장단

### 제28조 (지위)

- ①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약학총회, 약학대회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,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대외적으로 각계각층과의 연대활동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대표한다.
- ③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. 단,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졸업, 퇴학, 자퇴, 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제29조 (의무)

약학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모든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,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가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갖는다. 또한, 본 회의 대표로서 성균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와 대외연락활동에 참석한다.

### 제30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진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,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약학총회, 약학대회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,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특별기구의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.
- ⑤ 약학대학집행위원회 집행국(부)장과 특별기구의장을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을 확정한다. 단,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약학대학집행위원회 집행국(부)장을 선거 유세기간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인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당선 확정공고까지로 하며, 이의제기가 없을 시 인준 의결은 생략 가능하다.
- ⑥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 예산 담당국(부)에서 편성된 예산안 · 결산안, 사업계획 등을 약학대학운영위원회 및 약학대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공고한다.
- ⑦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⑧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각 집행국(부)의 지도, 조절,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.
- ⑨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차기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당선자 공표일 이후 30일 이내의 인계인수기간을 갖는다.

### 제31조 (임기)

- ① 약학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공고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- ②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공고일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③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본조 1항에 따른 임기 이후로 선거가 미루어질 경우, 당해 약학대학집행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기를 대신하며, 보궐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한다.

### 제32조 (권한대행)

- ①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재직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을 대체한다.
- ②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조 제1항에 준한다.
- ③ 권한대행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공고까지로 한다.

## 제 6 장 약학대학집행위원회

### 제33조 (지위)

약학대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며,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전체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기구이다.

### 제34조 (구성)

약학대학집행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회장단과 각 집행국(부)장, 집행국(부)차장, 집행국(부)원으로 구성된다.

### 제35조 (업무 및 권한)

약학대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- ① 약학총회, 약학대회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된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.
- ②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반 사업보고와 예산안 · 결산안을 약학대회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약학총회, 약학대회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위 기구들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.
- ④ 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차기 약학대학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시 차기 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내용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과 차기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자는 협의를 통해 인계인수를 위한 연설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36조 (회의)

약학대학집행위원회의는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혹은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
## 제 7 장 학과 학생회

### 제37조 (지위)

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자치기구이다.

### 제38조 (회원)

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.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### 제39조 (조직)

- ① 학과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, 학생대표자회의,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학과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과 학생총회, 학과 학생대표자회의 및 학과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.
- ③ 학과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.
- ④ 학과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.

### 제40조 (학과 학생회장단)

- ① 각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- ② 각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.

### 제41조 (독립성 보장)

- ① 학과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약학대학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② 학과 학생회칙을 개정한 경우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42조 (준용)

학과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약학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한다.

## 제 8 장 특별기구

### 제43조 (특별기구의 성립요건)

본회의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립요건 모두에 해당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에 걸맞을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본회 회원 중 특정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,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
2. 본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
3. 본회의 관련분야 집행국(부)이 없거나, 존재하고 있는 집행국(부)으로는 회원 전체 또는 특정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

### 제44조 (절차)

본회 산하의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.

- ①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서명과 회원명부, 소개서, 전년도 활동보고서, 사업계획서, 서약서를 준비하여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- ②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약학대회에서 의결을 통해 특별기구의 건설을 인준한다.

### 제45조 (특별기구장의 선출)

특별기구의 장은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
### 제46조 (특별기구장의 지위)

- ①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②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.

## 제 9 장 재정

### 제47조 (재원)

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 배분금, 사업별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### 제48조 (회계연도)

-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.
-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.

### 제49조 (예산)

- ① 예산은 약학대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, 조정 및 의결한다.
- ② 확정된 예산안은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50조 (결산)

- ① 매 학기마다 결산을 하여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결산안은 약학대학운영위원회 심의종료 15일 이내에 공고한다.
- ③ 결산안은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.

### 제51조 (거부권)

- ①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산안을 검토 및 수정하여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한다.

### 제52조 (예산관리 및 인출)

- ① 예산은 약학대학집행위원회 예산담당국(부)에서 관리하며 모든 인출사항은 담당 집행국(부)장이 관리한다.
- ② 약학대학 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삭감,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.
- ③ 본회 재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약학대학집행위원회 예산담당국(부)의 집행국(부)장이 책임을 진다.
- ④ 보증금과 수입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 결산안 보고 시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해야 한다.

## 제 10 장 선거

### 제53조 (선거 원칙)

본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54조 (선거 시기)

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실시한다. 상세한 일정은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 제55조 (입후보자)

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

### 제56조 (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선관위는 약학대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.
- ③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.
- ④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관위는 투표일 30일 전에 구성된다.
- ⑤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의 약학대학학생총투표 시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선관위의 구성에서 제외된다.

### 제57조 (선거운동)

-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본부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약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.
- ③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가 정한 날로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.

### 제58조 (당선)

선거인 채적수의 과반수 투표 중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인 채적수의 과반수 투표 중 유효투표의 2/3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### 제59조 (당선무효)

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.

1. 1위와 2위의 선본 간 득표차이가 오차표수 이하일 경우
2. 오차율이 3%를 넘을 경우

### 제60조 (재투표)

- ① 제54조제1호의 경우 해당 선본 간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.
- ② 제54조제2호의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.

### 제61조 (선거무효)

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선거를 무효한다.

- ① 투표율이 50%가 안 될 시 선거를 무효한다.
- ② 선거 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선관위는 약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, 약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를 무효한다.

### 제62조 (재선거)

선거가 무효될 시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실시하며,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### 제63조 (보궐선거)

- ①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권위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한다. 단, 잔임 기간이 120일 이내일 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시 탄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한다. 단, 약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보궐선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가결될 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- ④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준하는 구성과 권한을 갖는다.
- ⑤ 보궐선거의 선거시행세칙은 본선거의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.

### 제64조 (선거시행세칙)

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.

## 제 11 장 비상대책위원회

### 제65조 (시기)

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구성한다. 단, 제 1호의 경우 전임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.

1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
2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사퇴하였을 때
3.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

### 제66조 (구성)

-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을 호선한 후, 약학대학집행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제60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약학대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중 1인을 호선한 후, 약학대학운영위원회와 약학대학집행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

### 제67조 (권한)

-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약학대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-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68조 (의무)

-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의무를 갖는다.
- ②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지위를 누구에게도 이임할 수 없다.
- ③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제69조 (임기)

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약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 확정공고까지로 한다.

## 제 12 장 탄핵

### 제70조 (사유)

약학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호의 사유를 발생시킬 시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탄핵을 받는다.

1. 학생회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자
2. 학생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
3. 학생회의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중단한 자
4. 약학대학운영위원회의 감사 결과, 학생회비를 유용한 자
5. 기타 학생회 회칙을 위배한 자

### 제71조 (발의)

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시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거나 대의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.

### 제72조 (절차)

① 제66조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약학대회 심의 후 가결되면 탄핵안이 상정되며 약학대학운영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약학총회를 소집하거나, 1주일 이내에 선관위를 구성하여 2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약학대학학생총투표를 실시하여 탄핵여부를 결정한다. 탄핵여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.

1. 약학총회 시 본회 회원 2/3 이상의 찬성
2. 약학대학학생총투표 시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/3 이상의 찬성
- ②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그 대상자는 약학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, 약학대학학생총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.
- ③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 단,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약학대학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,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.

## 제 13 장 사퇴

### 제73조 (절차)

- ① 약학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 사유가 포함된 사퇴서를 약학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집행국(부)장, 집행국(부)차장, 집행국(부)원이 해당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사유가 포함된 사퇴서를 약학대학 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74조 (공표)

- ① 약학총회의 의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.
- ②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집행국(부)장, 집행국(부)차장, 집행국(부)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.

## 제 14 장 회칙 개정

### 제75조 (발의)

본회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.

1.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
2. 대의원 재적의원 1/3 이상의 서면 발의
3. 약학대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/3 이상의 서면 발의
4. 약학대학 학생회장의 요구

### 제76조 (의결)

① 회칙 개정안의 의결권은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.

② 회칙 개정안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77조 (공포)

① 약학대회에 상정한 회칙 개정안이 가결 되었을 시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.

②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공포 이후 즉시 실효성을 갖는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① 이 회칙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한다.

② 이 회칙의 개정 시행 시 본회의 모든 회원은 이 회칙을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.

### 제2조 (유권해석)

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약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있다.

### 제3조 (관례의 종용)

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르며, 기존의 각종 학생의결기구의 회의록에 의거한 관례에 따른다. 단, 이로 인하여 주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.